

문서관리	서로 - 회원사 배포 2024-1	SR 노동뉴스(1월)	자문자
일자	2024. 2. 7		서로 노무사
업체명	회원사		

**2024 이렇게 바뀝니다.**

**임금, 근로시간등**

● **최저임금 인상**

시급 : 9,860원    월급여 : 2,060,740원.(월209시간 기준)

\* 2024년 부터는 복리후생비, 상여금, 식대등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가능.

시행일 : 2024. 1. 1

☞ 최저임금 약정시 계약서 재작성 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필요.

● **중소기업 퇴직연기금 지원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기금 가입시 사업주 부담금 10% 3년지 원
-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30%미만(268만원)인 경우 부담금의 10%지원.

시행일 : 2024. 1. 1

**4대보험**

● **보험요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12.81% ->12.95%

시행일 : 2024. 1. 1

●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 적용유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요율이 증가하나 이를 3년간

적용유예하기로 함.

**\*현행 보험요율**

- 150 미만 :1만분의 25
- 150명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45
- 150명 이상 천명미만: 1만분의 65
- 1000명 이상 : 1만분의 85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시행.**

퇴직공제 가입대상 근로자(공공1억, 민간50억 이상공사)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전자카드로 출,퇴근 체크. 해당 사업장은 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3억이하 공사에는 애플리케이션 웹 가능)

시행일 : 2024. 1.1

●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270만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80%지원
- 대상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만지원)

시행일 : 2024. 1.1

●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완화.**

- 50인 이상 사업장 기존 년2회 -> 년 1회

시행일 : 2024. 1.1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3 지원비율	50%		30%		20%		
'23 월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 개정 〉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24 지원비율	80%		60%		50%		
'24 월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시행일 : 2024. 1월

## 모성보호, 육아지원

### ● 6+6 육아휴직제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지급(상한 : 최대450만)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구분	父 1개월	父 3개월	父 6개월
母 1개월	父: 200 母: 200	父: 500(200+150+150) 母: 200	父: 950(200+150+150+150+150+150) 母: 200
母 3개월	父: 200 母: 500(200+150+150)	父: 750(200+250+300) 母: 750(200+250+300)	父: 1,200(200+250+300+150+150+150) 母: 750(200+250+300)
母 6개월	父: 200 母: 950(200+150+150+150+150+150)	父: 750(200+250+300) 母: 1,200(200+250+300+150+150+150)	父: 1,950(200+250+300+350+400+450) 母: 1,950(200+250+300+350+400+450)

시행일 : 2024. 1.1

## 산업안전

###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전면시행 됨.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

1억 이상 공사현장에 남성30인당 1개소, 여성20인당 1개소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함.

시행일 : 2024. 2.1

## 지원금

###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로시간(기본+연장)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인당 30만원~50만원씩 3개월 단위로 1년간.(인당 연간 360만~600만)

- 전체근로자의 30%한도, 10인 미만은 3인.

시행일 : 2024. 1. 1

### ● 일, 가정 양립지원금 시행

- 근로자가 선택근로시간,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인당 30만원씩 년 360만 지원.

시행일 : 2024. 1. 1

### ● 청년 일자리 채용 지원금

- 청년(34세이하)이 빈일자리 중소기업(조선,제조,농.해수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6개월 취업시 각100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시행일 : 2024. 1. 22

## 구 인

### ● 국민취업제도 확대

- 대상 : 15~34세 + 병역기간까지 참여 가능.
- 소득지원 : 133.7만 이하 소득까지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시행일 : 2024. 2. 9

### ● 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 자영업자 : 기존 연매출 1.5억 -> 연매출 4억 이하
- 특고종사자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300만 미만 -> 500만 미만.

시행일 : 2024. 1. 1

### ● 외국인 E-9비자 특화훈련 지원

- E9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훈련센터에서 직무,언어,문화등 특화훈련을 지원함.

시행일 : 2024. 1월.

## 판례 · 행정해석

### I. 주 연장근로 위반여부 판단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노동부는 주12시간 연장 초과여부는 일기준 8시간 초과한 시간만 따져서 주12시간을 초과한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했습니다. 다시말하여 주중 근로시간이 8시간에 못미치는날은 고려하지 않고 8시간 초과해서 일한 날만 합산한 결과가 12시간 초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할때는 했지만 실패는 쉬었으니 과중한 근로가 아니라고 본 듯합니다. 반면 노동부는 그건 따지지 말고 많이 근로간것만 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입장을 변경하여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 II.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여부(대법 2017다3558,35596병합 전원 합의체)

대법원은 최근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종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하면서, 다만, 근로자들이 그 동의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유효하다고 함.

## 인사관리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질의회신 여성고용정책과-2500)

근로기준법에 단축의 대상 기간 산정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등에 대한 내용

만 규정되어있을 뿐, 해당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작성의무는 없음.

\* 본자료는 홈페이지([www.서로노무사.com](http://www.서로노무사.com))에도 올려져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